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60
----------	-----------

제안년월일 : 2014년 9월 30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다른 법령 인용이나 준용의 경우에는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보완하고, 안 제4조 본문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해 각 호에서 이하 “영”으로 약칭규정 하였으므로 ‘영’으로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여비규정”은 “영”으로 통일하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큰 따옴표(“ ”)는 낫표(「)로 함(안 제4조제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7호 중 “공무원여비규정”은 “영”으로 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큰 따옴표(“ ”)는 낫표(「 」)로 한다.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소속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 장관”과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제3호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가목과 나목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

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 제1항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비전임계약직”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다. 같은 조례 제67조 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의 단서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2조, 제3조, 별 표 2, 별표3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u>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공무원</u>----- ----- ----- -----.</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u>시공무원</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략)</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u>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u>----- -----.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서울특별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u>공무원여비규정</u>」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u>공무원여비규정</u>」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u>공무원 여비 규정</u>」 ----- -----. ② ----- 「<u>공무원 여비 규정</u>」 ----- -----.</p>
<p>제4조(<u>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u>)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p>	<p>제4조(<u>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u>) ----- ----- 「<u>공무원</u></p>

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이하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 「서울특별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로 보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4. 5. (생략)
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여비 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

1. -----
--- “소속 장관”과 -----
-----“소속 기관의 장” -----
-----.
2. -----안
전행정부장관 -----
-----.
3. -----
「공용차량 관리 규정」 ----

-----안전행
정부장관-----.
4. 5. (현행과 같음)
6. -----

-----.
- 가. -----
“안전행정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7.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

나.----- “안전행정부장관 -----
-----”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